

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12조(시행)에 의거하여 정선  
군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 규정을 공포한다.

2017년 10월 31일

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

규정 제 174 호

###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

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①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, “임원”을 “임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
부 칙 (2017년 10월 31일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7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
②정선군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
③정선군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